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 168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
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
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추심업체의 과도한 초본 발급으로 인해 일반 민원인들의 제증명 발급
지연 등 문제점 제기로 구청에서만 이해관계인 초본을 발급하여 주민에
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권한의 위임(안 제2조 제6호)

-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
초본에 한정한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555, FAX : 3396-8613, E-mail : leehy052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 1. ~ 5. (생략) <신설>	제2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채권·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